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경상북도 공고 제2019-57호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경상북도지사

1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

2 지원사업 유형 : 6개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9년 지원 대상 공익사업의 유형은 아래 6개 유형임. 사업신청 단체는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경상북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단체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해당 사업 제출

① 사회복지(예시 : 여성·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증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
② 사회통합(예시 : 지역 계층간 갈등해소, 다문화·탈북자 생활적응 지원, 부정부패 감시 등)
③ 국민안전(예시 : 재해·재난 예방 및 구조·구호활동, 안전사고 예방, 4대악(학교·성폭력·가정폭력·유해식품) 근절 활동 등)
④ 문화·관광(예시 : 전통문화 계승발전, 융복합형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
⑤ 민생경제(예시 : 경제적 약자 보호, 상생 시장경제 질서 확립, 사회적·경제적 약자 고용확대 및 고용환경 개선 등)
⑥ 생태계보호, 지속가능한 발전(예시 : 친환경 실천 캠페인, 강하천 살리기,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등)

※ 사업유형과 세부적인 사업내용 예시는 경북도청 홈페이지(www.gb.go.kr)에 게재

3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포함)는 사업선정을 위한 고려사항(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 포함) 등을 포함 8페이지(A4)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사업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주사무소 등기부등본 및 건물사용승락서(임대차계약서)

※ 경북도청 홈페이지(www.gb.go.kr) "소통참여/민간단체/NGO/공지사항" 에 게재된 서식 사용

○ 제출기간 : 2019. 1. 21(월) 09:00 ~ 2. 8(금) 18:00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신청 : ㉾ 36760 경상북도 안동시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새마을봉사과

※ 조기 신청 접수 요망, 2. 8.(금) 18:00 이후 접수 불가(우편물은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지원사업 문의 : 경상북도 새마을봉사과(전화 : 054-880-2904)

4 사업 신청안내 및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19. 1. 21(월) 14:00**, 경북도청 다목적홀(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1층)

○ 주요내용 : 사업유형, 사업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 기준, 도 보조금 종합관리시스템 활용방법

5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심사·선정 : 경상북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심사기준 : 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적절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사회·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 등은 배제할 수 있음

※ 심사는 서류심사 원칙, 필요시 인터뷰, 현지확인 실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최근 3년내 '불법폭력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그 산하조직
- 중앙행정기관, 타시·도 및 시·군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2018년 경상북도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포기로 반납한 단체 또는 부당 집행으로 인한 환수단체
- 동일단체 동일사업으로 5년 연속하여 선정된 사업

○ 발표 : 3.4(월) 예정, 선정 단체 개별 통지

※ 사업선정 후 단체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 중복지원 등 부적격요인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실행계획서 승인 후 1차(70%), 2차(30%)로 나누어 보조금을 단체의 은행계좌로 송금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경상북도 보조사업관리시스템 활용에 의한 정산)

○ 지출은 반드시 농협·대구은행에서 발급한 보조금 결제전용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7 기 타

○ 사업신청 및 지원사업 선정 관련 유의사항

- 단체별 사업신청/지원은 1개 사업(지원범위 3천만원 이내) 원칙, 신청자격 있는 2개 이상 단체의 컨소시엄 사업신청시 가점부여
- 자부담은 보조금 신청액의 10%, 15%, 2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범위 3천만원 이내 차등적용 (1천만원 이내 1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내 15%,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내 20%)
- 자부담 비율 미충족 시에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제외
-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만 지원
- 2018년 경상북도 공익활동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우수단체는 가점을, 미흡단체는 감점처리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